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

및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

2002년 9월

사회복지사 고용자

서론

이 문서는 합의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행동 및 실무 기준을 설명한다. 이 서론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고용자, 서비스 사용자 또는 일반인들이 이 강령의 내용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 내용은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에서도 언급된다.

'종합 사회복지 협의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2001년 10월 1일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북아일랜드 사회복지 협의회 (Northern Ireland Social Care Council), 스코틀랜드 사회 서비스 협의회(Scottish Social Services Council) 및 웨일즈 사회복지 협의회 (Care Council for Wales)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들은 행동 강령을 개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준 향상을 위해서 공동으로 강령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복지사와 고용자에 대한 두 가지 행동 강령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강령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높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사와 고용자의 연대 책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행동 강령의 내용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은 사회복지사 관리와 관련된 고용자의 책임을 명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강령은 고용자가 고용자 행동 강령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의 행동 강령을 따르도록 지원하며, 복지사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행동 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은 복지사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 행동 및 실무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들의 목록이다. 많은 고용자들이 지역별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또한 고용자, 동료, 서비스 사용자, 보호자 및 일반인들이 복지사에게 기대하는 바를 사회복지사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이들 강령은 기존의 좋은 관행을 반영하며, 복지사와 고용자는 강령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미 원하는 공통적 기준을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협의회들은 강령을 널리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준들을 장려한다.

행동 강령의 활용 방법

이들 행동 강령은 영국 내 4 개 국가에서 사회복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첫 단계이다. 위원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등록할 책임이 있다. 등록부는 등록된 사람들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며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함을 나타내는 공공 기록이 될 것이다.

협의회들은 잘못된 행위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거나 등록된 복지사의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한다.

행동 강령이 주는 의미

사회복지사인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며,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행동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 강령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복지사 고용자인 경우, 여러분은 피고용인을 관리하고 고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에 비추어 여러분의 업무 방법 및 정책 기준을 검토해볼 것을 권장한다.

서비스 사용자나 일반인인 경우, 여러분은 이 행동 강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고용자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

이 강령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고용자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관리의 목적은 서비스 사용자와 보호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이 강령은 기존의 고용자 정책을 대체 또는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을 보완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또한 이 강령은 직원 채용 관련 법률, 요건 및 지침 등 포괄적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고용인들은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지위

‘국가 사회복지 기준 위원회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와 ‘사회복지 서비스 시찰단 (Social Services Inspectorate)’은 사회복지 기준을 시행할 때 이 강령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관리와 관련된 책임 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
-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비치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종합 사회복지 협의회 (GSCC)’가 제정한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들이 기술과 지식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함
- 위험하거나 차별적인 착취 행위와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비치하여 이를 이행함.
- GSCC 의 행동 강령을 사회복지사, 서비스 사용자, 보호자에게 널리 전파하고 GSCC 의 절차에 따라 협력함

1 사회복지사 고용자로서, 여러분은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1.1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만을 사회복지사로 선발한다는 데에 중점을 맞춘, 엄격하고 철저한 채용 및 선발 절차를 활용하여야 함
- 1.2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범죄 기록의 유무와 관련 기록들을 확인하고, 지원자가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함
- 1.3 신뢰할 수 있는 조회처나 신원 보증인을 찾아서 제공함
- 1.4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 관련 규정, 조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함
- 1.5 고품질 서비스와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및 조직의 성과를 관리함

2 사회복지사 고용자로서, 여러분은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비치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종합 사회복지 협의회 (GSCC)'가 제정한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2.1 비밀보장, 기회 균등, 위험 평가, 물질 남용, 기록 유지 및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로부터의 금품/선물 수취에 관하여 문서화된 정책을 시행, 감시함

- 2.2 효율적인 업무 방식과 좋은 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또한 부족한 성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지원함
- 2.3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요인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원활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사 및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야 함
- 2.4 사회복지사들이 GSCC의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는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됨

3 사회복지사 고용자로서, 여러분은 사회복지사들이 기술과 지식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3.1 사회복지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새롭고 변화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및 교육 개발 기회를 제공함
- 3.2 효율적인 작업장 평가와 실무 학습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 업무 관련 교육 훈련을 이행하도록 지원함
- 3.3 GSCC의 등록 자격요건 및 지속적 직무 개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직위에 있는 직원을 지원함

3.4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4 사회복지사 고용자로서, 여러분은 위협하거나 차별적 착취 행위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비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4.1 위협적 행위, 학대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복지사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 같은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 4.2 위협, 차별, 학대, 착취적 행동과 관행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 같은 보고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처리함
- 4.3 직원들에 대한 폭력, 위협, 학대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복지사,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며, 폭력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폭력 사건은 적절히 관리함
- 4.4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함
- 4.5 직원들의 복지 및 기회 균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비치하여 이행함
- 4.6 서비스 사용자들의 보호와 안전이 여러분의 최우선 과제를 전제로 하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약물 및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주며, 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사회복지사 고용자로서, 여러분은 **GSCC**의 행동강령을 사회복지사, 서비스 사용자, 보호자에게 널리 전파하고 **GSCC**의 절차에 따라 협력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5.1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행동 강령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이 강령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
- 5.2 사회복지사들에게 **GSCC**의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의 내용과 이 강령을 준수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
- 5.3 서비스 사용자들과 보호자들이 이 강령과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정책에 의거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및 필요시 이 강령과 관련하여 **GSCC**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설명함
- 5.4 사회복지사들의 행동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GSCC**의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을 참고함
- 5.5 등록 자격 유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록된 사회복지사의 부당행위를 **GSCC**로 보고하며, 해당 복지사에게는 그 사실이 **GSCC**에 보고되었음을 알려줌
- 5.6 **GSCC**의 조사 및 청문회에 협조하며, **GSCC**의 조사 결과 및 결정에 적절히 대응함

사회복지사

서론

이 문서는 합의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행동 및 실무 기준을 설명한다. 이 서론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고용자, 서비스 사용자 또는 일반인들이 이 행동 강령의 내용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본 내용은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에서도 언급된다.

‘종합 사회복지 협의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2001년 10월 1일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북아일랜드 사회복지 협의회 (**Northern Ireland Social Care Council**), 스코틀랜드 사회 서비스 협의회(**Scottish Social Services Council**) 및 웨일즈 사회복지 협의회 (**Care Council for Wales**)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들은 행동 강령을 개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준 향상을 위해서 공동으로 강령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복지사와 고용자에 대한 두 가지 행동 강령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강령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높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사와 고용자의 공동 책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행동 강령의 내용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은 복지사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 행동 및 실무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들의 목록이다. 많은 고용자들이 지역별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또한 고용자, 동료, 서비스 사용자, 보호자 및 일반인들이 복지사에게 기대하는 바를 사회복지사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사회복지사 고용자의 행동 강령’은 사회복지사 관리와 관련된 고용자의 책임을 명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강령은 고용자가 고용자 행동 강령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의 행동 강령을 따르도록 지원하며, 복지사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행동 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강령은 기존의 좋은 관행을 반영하며, 복지사와 고용자는 강령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미 원하는 공통적 기준을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협의회들은 강령을 널리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들 기준들을 장려한다.

행동 강령의 활용 방법

이들 행동 강령은 영국 내 4 개 국가에서 사회복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첫 단계이다. 위원회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등록할 책임이 있다. 등록부는 등록된 사람들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며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함을 나타내는 공공 기록이 될 것이다.

협의회들은 잘못된 행위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거나 등록된 복지사의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한다.

행동 강령이 주는 의미

사회복지사인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며,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행동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동 강령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복지사 고용자인 경우, 여러분은 피고용인을 관리하고 고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기준에 비추어 여러분의 업무 방법 및 정책 기준을 검토해볼 것을 권장한다.

서비스 사용자나 일반인인 경우, 여러분은 행동 강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고용자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행동 강령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을 제시하며, 아울러 서비스 사용자 및 일반 대중에게 사회복지사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기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 강령은 사회복지사들이 준수해야 할 법률, 업무 표준, 고용자 정책 및 절차 등 포괄적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나 태만으로 인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위

‘종합 사회복지 협의회’ (General Social Care Council)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등록된 복지사가 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고용자들은 직원들의 행위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강령을 참조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임무

-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킴
-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함
- 서비스 사용자를 위협이나 위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들의 독립성을 증진시킴
- 서비스 사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울러 그들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함
-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 자신의 업무 품질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향상시킴

1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1.1 개인자격으로 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1.2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들의 개인적 견해와 소망을 존중하고, 필요 시 의견 제시를 권장함
- 1.3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용자 권리를 지지함
- 1.4 서비스 사용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 유지시켜 줌
- 1.5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촉진함
- 1.6 다양성 및 문화적 차이와 가치를 존중함

2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2.1 정직과 신뢰성을 유지함
- 2.2 적절하고, 개방적이며 솔직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함
- 2.3 비밀 정보를 존중하고, 서비스 사용자와 보호자에게 기밀 유지에 대한 기관의 정책을 명확히 설명함
- 2.4 신뢰를 바탕으로 의지할 수 있는 행동을 함
- 2.5 업무 관련 책임, 계약 및 계획을 준수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비스 사용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함

- 2.6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판단이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2.7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로부터의 선물 및 금품 수취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함

3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서비스 사용자를 위협이나 위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들의 독립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3.1 서비스 사용자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산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3.2 위협, 학대, 차별, 착취적 행동과 관행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이미 확립된 절차를 활용함
- 3.3 업무 수행 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폭력이나 모욕적 행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업무 방식이나 절차를 준수함
- 3.4 여러분의 고용자나 해당 기관에 안전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운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킴
- 3.5 안전하지 못한 동료의 업무 방식이나 안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용자나 해당 기관에 통보함
- 3.6 물질 남용에 관한 내용 등, 고용자의 건강 및 안전 정책을 준수함

3.7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같은 불만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함

3.8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들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확히 인식하여 이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활용함

4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서비스 사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울러 그들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4.1 서비스 사용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서비스 사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실재적 위험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4.2 서비스 사용자의 행동이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위험 평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함

4.3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재적, 잠재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4.4 위험 평가 결과 및 그 의미를 관련 동료나 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함

5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5.1 서비스 사용자, 보호자 또는 동료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5.2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 및 동료를 착취하는 행위
- 5.3 서비스 사용자와 보호자의 신뢰감을 역이용하거나,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나 재산, 가정 또는 직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역이용하는 행위
- 5.4 서비스 사용자와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 5.5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 또는 동료들에 대하여 불법,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
- 5.6 서비스 사용자나 보호자 또는 동료들의 불법,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행위
- 5.7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5.8 업무 수행 장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간에,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6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 품질에 책임을 지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다.

- 6.1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련 업무 기준을 준수함
- 6.2 수립된 업무 수행 절차 요구에 따라 명확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함

- 6.3 여러분이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어려움에 관하여 고용자나 해당 기관에 통보함
- 6.4 여러분이 업무 수행 자질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업무 진행 방법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여러분의 고용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청함
- 6.5 동료들과 공개적이고 협조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을 존중하여야 함
- 6.6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함
- 6.7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과 협조적인 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함
- 6.8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학습 및 개발 노력에도 기여해야 함

General Social Care Council

Goldings House

2 Hay's Lane

London

SE1 2HB

020 7397 5100

www.gsc.org.uk

© Copyright General Social Care Council 2002